# (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) 검 **토 보** 고

### 1. 의안제출

○ 제출일자 : 2017. 5. 31.(수)

○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○ 예비심사 : 2017. 6. 9.(금), 상임위원회

회 부 일: 2017. 6. 16.(금)심 사 일: 2017. 6. 19.(월)

# 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제43조 및「지방자치법」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.

# 3. 주요내용

가. 지출결정 현황

(단위:원)

구 분	지출결정액(A)	지출액(B)	이월액(C)	집행잔액 (A-B-C)
일반회계 (예비비)	338,587,000	249,513,090	0	89,073,910

나. 지출내역 : 2건

(단위:원)

부서	세부사업	지출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	적 요
	합 계	338,587,000	249,513,090	89,073,910	
총무과	계약지출 관리	124,087,000	124,086,340	660	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
안 전 총괄과	민간인 재해보상금	214,500,000	125,426,750	89,073,250	태풍 차바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급

#### 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129조
- 지방재정법 제43조

#### 5. 검토의견

- 예비비는 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기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.
- 201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에 3억 3,858
  만원을 결정하여 이중 2억 4,951만원을 지출하고 8,907만원의 집 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,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사항 없음.
- 지출내역으로는

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1억 2,408 만원, 태풍 차바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억 2,542만원이며 이는 예비비제도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집행이라 사료됨.

# 관 련 법

지방자치법 [법률 제14768호, 2017.4.18., 일부개정] 행정자치부(자치제도과)

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지방재정법 [시행 2017.3.30.] [법률 제14113호, 2016.3.29., 타법개정] 행정자치부(재정정책과)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 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